

연천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 [2024. 9. 24] 조례 제3995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61조에 따른 별표 6 제1호나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)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주사무소,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연천군에 소재하고, 연천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1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